

1995. 12.

光州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總 務 社 會 委 員 會

光州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

1995年 12月
總務社會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12月18日
- 나. 提出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12月 18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12月 20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5年 12月 20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企劃監查室長 李 龍 玉)

가. 提案 事由

- 광주광역시로부터 현장사업용 관용차량 운전원 1명과 재난관리전담인력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主要 骨子

-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“322명”에서 “325명”으로 조정함
 - 현장사업용 관용차량 운전원 정원 — 1명 증
 - 지역재난관리 전담인력 정원 — 2명 증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朴 鍾 根)

-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장의 정원승인에 의하여 구분청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재활용품수집등 현장사업용 관용차량구입에 따른 운전기사 1명 (기능 10등급)과
- 민방위 재난관리 전담을 위하여 5급 과장요원 1명, 6급 계장 요원 1명의 증원을 하기 위하여 심사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 이었음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論 要旨 : 생 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 음

8. 其他 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322명”을 “32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